

“징용피해, 조약있어도 개인배상 해야”

美 캘리포니아주 한인 집단소송 맡은 신혜원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지금 전쟁피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발효된 특별법에 따라 2차대전 때 독일 및 일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배상 청구소송이 그것이다. 미군 포로들이 올 하반기에만 20여건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인, 네덜란드인 등도 소송대열에 뛰어들었다.



재미교포 변호사 신혜원(37·사진)·한태호씨도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를 원고로 삼아 일본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신변호사가 소송자료 수집차 22일 한국에 왔다. 신변호사는 85년 서울

**당당히 배상받을 마지막 기회
연방특별법 상정등 상황유리**

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지난 10월 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후 우리 원고측은 물론 피고측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우리가 당당하게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꼭 이겨야만 하고 절대로 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신변호사측은 유대인이 독일회사를 상대로 낸 배상소송을 맡아 승소한 국제민권변호사회 부회장 배리 피셔 변호사, 유명한 로펌 리프 캐브레이저 등과 손

을 잡았다. 집단소송은 담배소송에서 보듯 성공하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 일본회사로 보아서는 ‘느닷없는’ 법률 때문에 거털 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때문에 일본측도 거대 로펌을 고용, 방어를 나서고 있다.

일본측은 한·일수교 때 맺은 양국간 조약을 들먹이며 다 끝난 일이라는 종전의 논리를 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불리할 것 같으나 재판부에 이 건 연방차원의 문제라며 연방법원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의 또다른 특별법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어 내년 1월 통과될 경우 원고측에 더욱 유리하다는 게 신변호사의 판단이다.

연방법원으로 갈 경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징용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원고가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

신변호사는 “국가간에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개인의 피해배상 요구권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글 이종탁기자 jongtak@kyunghyang.com
사진 우철훈기자 photowoo@kyunghyang.com